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4. 2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규식

## 1. 발 의 자: 이민옥 의원

## 2. 제안이유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장기요양요원은 우리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서 미래 필수적인 직업군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3.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과 용

어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 (안 제6조)
- 마.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 보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7조)
- 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 조건 및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8조)
- 사. 표창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나. 협조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 라. 입법예고(2021. 4. 2.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래 필수적인 직업군으로 장기요양요원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시행규칙까지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4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둠
- 처우 개선 사업 등,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안 제6조 ~ 안 제7조)
  - 안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표창(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9조에서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이 표창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최근 인구 고령화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

가 시행되면서, 노인 돌봄 기관인 장기 요양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이에 해당되며, 우리 구에는 현재 총 65개 장기요양시설에 1,601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sup>1)</sup>
- 돌봄 노동은 일상적으로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고립된 채 돌봄을 제공하는 특성상 성희롱 등으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폭언·폭행으로 인한 감정 노동, 산재 불인정 등 노동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16년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옹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sup>2)</sup>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자치구<sup>3)</sup>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1) 붙임 참고 (2021년 3월말 기준)

2) 서울시 전체 1개 광역센터, 4개 권역별 센터를 운영 중(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3)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북, 송파, 영등포, 은평, 중랑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바,
- 본 조례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권리 보장, 근로조건 및 환경이 개선된다면 궁극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1] : 우리 구 시설 및 장기요양요원 수

(단위: 명, 2021. 3월말 기준)

시설유형	시설 수 (개소)	수급자 어르신	장기요양요원			
			합계	복지사	요양보호사	기타
합계	65	1,853	1,601	132	1,322	147
생활·이용시설(요양원 등)	19	669	415	43	235	137
방문시설(방문요양 등)	46	1,184	1,186	89	1,087	10